

외국환거래 상품설명서

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외국환거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실제 계약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이 적용되며 그 외에도 수출거래약정서, 수입거래약정서 또는 내국신용장거래약정서가 적용됩니다.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약관이 교부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.

1 상품 개요 및 상품의 특성

■ 상품명 : 매입외환, 외화지급보증, 내국신용장발행·매입

- **매입외환** :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에 따른 환어음 또는 운송서류 등을 은행이 매입하여 대금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거래
 - **신용장 방식** : 신용장에 의한 환어음 또는 운송서류등을 매입하는 거래
 - **무신용장 방식(D/P, D/A, CAD, COD 등)** : 수출계약서에 의한 환어음 또는 운송서류 등을 매입하는 거래
 - **수출대금채권(O/A) 방식** : 수출자의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거래
- **외화지급보증**
 - **수입신용장 발행** : 은행이 수입화물에 대한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조건부지급확약서를 발행하는 거래
 - **보증신용장(기타 외화지급보증서 등) 발행** : 수익자에 대하여 고객의 채무(계약) 불이행시 은행이 대신 지급하는 조건부지급확약서를 발행하는 거래
- **내국신용장* 발행·매입**
 - * 내국신용장 : 수출물품 또는 수출용 원자재를 국내에서 구매하기 위한 신용장

2 외국환거래 관련 비용

- **환가료** : 외국환거래에서 은행의 자금부담에 따른 이자조로 지급하는 수수료로 기간에 따라 환가료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 - **일람불 수출환어음매입 환가료**
[매입금액 x 매매기준율 x 매입일의 일람불 환가료율(1개월 LIBOR + Spread) x 표준우편일수/360]
 - **연지급 수출환어음매입 환가료**
[매입금액 x 매매기준율 x 매입일의 기간별 환가료율(기간별 LIBOR + Spread) x 기간일수/360]
- **지급보증료** : 수입신용장 발행·인수, 내국신용장 발행 또는 기타 외화지급보증시 은행에 지급하는 수수료
 - **발행시 : 발행수수료**
[개설금액 x 매매기준율 x 발행수수료율(신용등급 등에 따라 차등) x 기간월수/3]
 - **인수시 : 인수수수료**
[인수금액 x 매매기준율 x 인수수수료율(신용등급 등에 따라 차등) x 기간일수/360]
 - **기타 지급보증 : 기타 지급보증수수료**
[보증금액 x 매매기준율 x 보증요율(신용등급 등에 따라 차등) x 기간일수/360]
- **매입이자** : 내국신용장 매입 거래시 은행의 자금부담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
 - **원화표시 매입이자**
[매입금액 x 소정요율(기준금리+Spread) x 해당일수/365]
 - **외화표시 매입이자**
[매입금액 x 매매기준율 x 매입일의 일람불 수출환어음 적용 환가료율(1개월 LIBOR + Spread) x 기간일수/360]

- 외국환거래 관련 환가료 등은 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고객의 신용등급, 담보 유무 및 기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.

3 수수료 및 부대비용

- **취급수수료**
 -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 : (건당 원)
 - 내국신용장 매입수수료 : (건당 원)
- **부대비용**
 - 우편료 : 우편 도착지에 따라 차등 적용
 - 전신료 : 거래 업무 또는 전신문 분량에 따라 차등 적용
- **기타** : 외국환거래에 있어 해외은행의 업무처리 및 고객의 거래 형태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4 환가료 등 납입방법

- 외국환거래시 선취를 원칙으로 합니다.

5 외국환거래 상환방법

- **건별 만기일 또는 예정대체일에 일시 상환**(단, 보증신용장 등은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즉시 상환)
- 기타 상환방법은 수출거래약정서, 수입거래약정서, 내국신용장거래약정서 참조

6 유의사항

- **외국환거래의 제한**
 - 당행의 연체 대출금(지급보증대지급금 포함) 보유자, 당행에 손해를 끼친자,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 및 은행이 정한 사유로 외국환거래를 취급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.
- **아래의 경우 연체이자(지연배상금)를 내셔야 합니다.**
 - 외국환거래 상환방법에서 정한 기일을 경과하여 대외에서 매입대금이 입금되지 아니하거나 화환어음의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
 - 외국환거래 상환방법에서 정한 기일을 경과하여 대금을 결제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하여 은행이 대신 지급한 후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
 - 환가료 및 수수료 등을 납입하기로 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등
- **외국환거래 관련비용(환가료, 지급보증료, 매입이자) 및 수수료 등은 상담일 이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.**
- **기 타**



상품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(민원)이 있을 경우 수출입부(02-2004-0352)에 문의할 수 있고,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